

거창군민상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3~4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	2003. 2.
제출자	거창군수

■ 개정이유

- 군민상이 현재까지는 6개부문에 6명을 시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.
- 군민상의 대표성과 비례하여 수상자가 너무 많은 실정임.
※ 한해에 4명 선정된 경우가 3번 있음.
- 따라서, 군민상을 현행 6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여 군민상의 위상과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함.

■ 주요골자

- 군민상 수상자는 1명을 함. (안 제3조제2항)
- 시상자의 자격을 거창 거주 3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함.
(안 제4조)

■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5조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민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3조 “조제목 시상부문” 을 “추천·시상”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“시상” 을 “추천” 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“부분별로 1인을 시상함을 ”를 “1인을 시상함을”로 한다.

제4조 본문중 “3년”을 “10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시상및시기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 <u>상은 본상과 장려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2조(시상및시기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
<p>제3조(시상부문)</p> <p>① 군민상 <u>시상</u>부문은 다음과 같다. 제1호 내지 제6호(이하 생략)</p> <p>② 군민상은 <u>부문별로 1인</u>을 시상 <u>합을</u> 원칙으로 한다.</p>	<p>제3조(추천 · 시상)</p> <p>① 군민상 <u>추천</u>부문은 다음과 같다. 제1호 내지 제6호(현행과같음)</p> <p>② 군민상은 <u>1인</u>을 <u>시상합</u>을 원칙으로 한다.</p>
<p>제4조(시상자의 자격)</p> <p>군민상 수상 후보자는 본적지를 거창군에 두고 있거나, <u>3년이상</u> 거창군에 거주한 자로 한다.</p>	<p>제4조(시상자의 자격)</p> <p>군민상 수상 후보자는 본적지를 거창군에 두고 있거나, <u>10년이상</u> 거창군에 거주한 자로 한다.</p>